#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04 발의연월일: 2024. 12. 11.

발 의 자:문진석・이건태・박용갑

박성준 • 이정문 • 이광희

양문석 • 백혜련 • 강준현

김문수 · 장종태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발표한 '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'에서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출산·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여 출산·양육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속 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.

그런데 저출생 대응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설정하고,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·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도 교부기준에 반영할필요가 있음.

이에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'합계출산율을 반영 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'를 추가하고,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'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·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'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 및 제9조의3). 법률 제 호

##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9조의3제2항 중 "운영상황"을 "운영상황,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 · 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기준재정수요액) ① • ②	제7조(기준재정수요액) ① •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	③
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	
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	
정(補正)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계출
	산율을 반영하는 등 출산장려
	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9조의3(부동산교부세의 교부)	제9조의3(부동산교부세의 교부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	2
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	
재정여건이나 지방세 <u>운영상황</u>	<u>운영상황,</u>
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	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・교
정한다.	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
	<u> 상황</u>